

변경 대비표

□ 대상펀드명 : 트러스톤 장기고배당 증권투자자산탁[주식]

- 변경 사항 : ① 제9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
 ②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 ③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
 ④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

□ 효력발생일 : 2023. 10. 24.

□ 변경 내용

항 목	정정사유	정 정 전	정 정 후
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			
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	기재 정정	10.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(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,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 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년)이 되는 날에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펀드로서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,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, 판매회사,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	10.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(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,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 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년)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펀드로서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,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, 판매회사,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요약정보

투자비용	동종유형 총보수 최근 기준으로 업데이트	-	<u>2023. 8. 31. 기준</u>
	제 9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-	<u>2023. 9. 2. 기준</u>
투자실적추이 (연평균 수익률)	제 9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-	<u>2023. 9. 2. 기준</u>



운용전문인력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2023. 9. 30. 기준
과세	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	세액공제 :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<u>400 만원</u>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산하여 연 <u>700 만 원</u> 한도로 12%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. 다만, 「소득세법」 제 59 조의 3 제 1 항 제 1 호 및 제 2 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※ 지방소득세 별도	세액공제 :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<u>600 만원</u>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산하여 연 <u>900 만 원</u> 한도로 12%(종합소득금액 4.5 천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.5 천만원 이하인 경우 15%)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. 다만, 「소득세법」 제 59 조의 3 제 1 항제 1 호 및 제 2 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※ 지방소득세 별도
투자자 유의사항	기재 정정	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(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,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 년)이 되는 날에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펀드로서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,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, 판매회사,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	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(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,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 년)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펀드로서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,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, 판매회사,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

5. 운용전문인력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2023. 9. 30. 기준
가. 운용전문인력			
5. 운용전문인력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2023. 9. 30. 기준

나. 운용중인 집합투자 기구에 관한 사항			
5. 운용전문인력 다.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	최근 3년 경과 변경 내 역 삭제	현해정(2018.3.30~2020. 4.13)	〈삭 제〉
8. 집합투자기구의 투 자대상 가. 투자 대상	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	〈신 설〉	증권대차거래 목적 등 기재
8. 집합투자기구의 투 자대상 나. 투자제한	기재 정정	이해관계인과의 거래 : ▶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84 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 업자의 이해관계인과 다음의 방법으로 거래행위를 하는 행위. 단, 집합투자업자의 대 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 인과는 다음의 방법으로도 운용할 수 없음 - 제 17 조 제 2 항 제 1 호에 따른 단기 대출	이해관계인과의 거래 : ▶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84 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 업자의 이해관계인과 다음의 방법으로 거래행위를 하는 행위. 단, 집합투자업자의 대 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 인과는 다음의 방법으로도 운용할 수 없음 - 법 제 83 조 제 4 항에 따 른 단기 대출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	최근 3년 수익률 변동 성 변동에 따른 표준편 차 변경	표준편차 : 21.36%	표준편차 : 15.53%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 과되는 보수 및 비용	동종유형 총보수 최근 기준으로 업데이트 제 9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- -	2023. 8. 31. 기준 2023. 9. 2. 기준
14. 이익 배분 및 과 세에 관한 사항 나. 과세	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	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※ 별첨 참조 5)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③ 세액공제(2015. 1. 1. 부 터):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400 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	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※ 별첨 참조 5)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③ 세액공제(2023. 1. 1. 부 터):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600 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

		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산하여 연 700 만원 한도로 12%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. 다만, 「소득세법」 제 59 조의 3 제 1 항 제 1 호 및 제 2 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.	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산하여 연 900 만원 한도로 12%(<u>종합소득금액 4.5 천만원 이하 또는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.5 천만원 이하인 경우 15%</u>)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. 다만, 「소득세법」 제 59 조의 3 제 1 항 제 1 호 및 제 2 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-	--	---	---

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

1. 재무정보	제 9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-	<u>2023. 9. 2. 기준</u>
1. 재무정보 가. 요약재무정보	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	〈신 설〉 〈신 설〉	<u>증권대여 또는 증권차입에 따른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 내역</u> <u>〈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〉 및 〈주식의 매매회전율〉</u>
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	제 9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-	<u>2023. 9. 2. 기준</u>
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	제 9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-	<u>2023. 9. 2. 기준</u>

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
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. 회사 개요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3. 9. 30. 기준</u>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.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	최근 기준으로 기재	<u>제 24 기(2021.12.31)</u> <u>제 23 기(2020.12.31)</u>	<u>제 25 기(2022.12.31)</u> <u>제 24 기(2021.12.31)</u>
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. 운용자산 규모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3. 9. 30. 기준</u>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

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

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. 수시공시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	(2) 수시공시 ②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	(2) 수시공시 ②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(<u>법 제 230 조에 따른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</u>)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	---	--

※ 별첨

[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]

구분	주요 내용									
납입요건	가입기간 5년 이상, 가목 및 나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이내 가. 연 1,800만원(퇴직연금,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) 나.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(이하 "전환금액") 중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									
수령요건	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(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)									
공제제도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종합소득금액 (총급여액)</th> <th>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(퇴직연금 포함)</th> <th>세액공제율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4.5천만원 이하 (5.5천만원 이하)</td> <td>600만원</td> <td>15%</td> </tr> <tr> <td>4.5천만원 초과 (5.5천만원 초과)</td> <td>(900만원)</td> <td>12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종합소득금액 (총급여액)	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(퇴직연금 포함)	세액공제율	4.5천만원 이하 (5.5천만원 이하)	600만원	15%	4.5천만원 초과 (5.5천만원 초과)	(900만원)	12%
	종합소득금액 (총급여액)	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(퇴직연금 포함)	세액공제율							
4.5천만원 이하 (5.5천만원 이하)	600만원	15%								
4.5천만원 초과 (5.5천만원 초과)	(900만원)	12%								
※지방소득세 별도 ※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: 2023.1.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										
연금수령시 과세	연금소득세 5.5~3.3%(나이에 따라 변경, 종합과세 가능) 단, 이연퇴직소득은 3.3% (지방소득세 포함)									
분리과세한도	1,200만원(공적연금소득 제외) 1,2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또는 15% 분리과세 선택 가능 (단, 23.1.1 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적용) 단,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분리과세 적용 -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- 의료목적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									
연금외수령시 과세	기타소득세 16.5% (지방소득세 포함) 단,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									
해지가산세	없음									
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	천재지변, 가입자의 사망, 해외이주,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치료·요양 가입자가 사회재난지역에서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치료 금융기관의 영업정지, 인·허가 취소, 해산결의, 파산선고									
부득이한 연금외 수령시 과세	연금소득세 5.5~3.3%(지방소득세 포함)									
연금계좌 승계	상속인(배우자)가 승계 가능									

※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변경 전]

종합소득금액 (총급여액)	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(퇴직연금 포함)	50세 이상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(퇴직연금 포함)	세액공제율
4천만원 이하 (5.5천만원 이하)	400만원 (700만원)	600만원 (900만원)	15%
1억원 이하 (1.2억원 이하)			12%
1억원 초과 (1.2억원 초과)	300만원 (700만원)		

※지방소득세 별도

※50세 이상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적용 및 적용제외 대상

- 적용시기 : 2020.1.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

- 적용기한 : 2022. 12. 31.

- 적용제외 대상 : ① 종합소득금액 1억원 또는 총급여액 1.2억원 초과자

②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(금융소득금액 2천만원 초과자)

[변경 후]

종합소득금액 (총급여액)	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(퇴직연금 포함)	세액공제율
4.5천만원 이하 (5.5천만원 이하)	600만원	15%
4.5천만원 초과 (5.5천만원 초과)	(900만원)	12%

※지방소득세 별도

<삭 제>

<신 설> ※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: 2023.1.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